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10-10호

예고기간 : 2010. 2. 25 ~ 3. 17

담당부서 : 하도급총괄과(02-2023-4496)

전문참고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 개정취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71호, 2010. 1. 25. 공포, 2010. 7. 26.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하도급 계약추정제도의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방법, 기술자료의 정의,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시 별첨기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 등을 정하고,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정의 규정 신설

- 1) 법 제2조 제15항에 따른 기술자료 정의에 대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2) 기술자료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및 자료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

나.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시행 관련 규정 신설

- 1)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2)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항으로 ①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 ② 하도급 대금 ③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④ 위탁을 한 원사업자와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 그 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통지와 회신의 방법, 주소, 양식에 관하여 규정

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추가

-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원사업자가 소방산업공제조합의 보증서를 통해서는 의무이행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음
- 2) 원사업자가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도 보증서를 발급받아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
- 3)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

라.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명단 선정기준 및 명단공표심의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신설

- 1) 법 개정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기준, 명단공표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 2)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별첨기준'을 4점으로 규정하고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회를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외부 위원 각 3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는 등



마. 서류보존의무 대상에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추가

-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시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가 보존되지 않아 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생
- 2)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를 서류보존의무 대상에 포함
- 3)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위반 사항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법위반 여부 확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바.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

- 1) 신규제도와 원사업자의 새로운 의무규정이 도입되어 그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 마련이 필요
- 2)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통지 의무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서면발급 의무 규정(제3조) 중 법위반여부와 무관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규정(제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은 법 위반 적용 법조에서 제외

사. 별점부과기준 개정

-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별점산정의 기산일과 별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별점규정을 정비할 필요
- 2) 별점산정의 기산일 규정을 신설하고 하도급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금결제우수업체인 경우, 전자입찰우수업체인 경우 등의 별점 경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현금결제우수업체 기준을 완화하여, 별점 경감기준 중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3대 가이드라인' 관련 별점 경감기준을 '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별점 경감 기준으로 대체 등
- 3) 별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규정 삭제

- 1)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할 필요
-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련 규정(제8조부터 제13조까지)과 '거래가 끝난 날'의 의미 규정(제6조)이 법률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을 삭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내

○ 대통령령 : 제22010호

공포일자 : 2010. 2. 4

담당부서 : 소방제도과(02-2110-653)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nema.go.kr)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우수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노유자(老幼者)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무창층(無窓層)에서 축사는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내

○ 대통령령 : 제22061호

공포일자 : 2010. 2. 24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과(02-6922-0923)

전문참고 : 노동부(www.molab.go.kr)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9796호, 2009. 10. 9. 공포,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내

- 대통령령 : 제22052호
공포일자 : 2010. 2. 18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02-2110-6206)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 (www.moci.go.kr)
- 제안이유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한옥 건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며,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중 공장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하여 피난층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안 제2조제3호 및 제3조의2제4호)
 - 1)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한옥 건축물 보수 시 많은 불편이 발생함
 - 2) 한옥을 손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나.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 1) 가설건축물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주어 존치기간 연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수로 연장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에 건축주는 가설건축물을 철거당하거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2)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의 연장허가 신청이나 신고 없이 기존의 존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되도록 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존치기간을 만료시킬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다. 피난층에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포함(안 제34조제1항)
 - 1)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2)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에 포함되도록 하여 피난층에 대한 규정을 합리화함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 제2010-26호

예고기간 : 2010. 2. 5 ~ 2. 25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www.nema.go.kr)

전문참고 : 소방정책과(02-2100-5316)

● 개정이유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방재청장이 시·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결격사유 중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발생시 소방방재청장이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 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소방활동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도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발생시 시·도 소방력을 동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동원요청 방법과 동원소방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3) 소방방재청에게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국가적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대한 직무집행방해 금지의무 및 벌칙조항 신설

- (1)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가 '06년 이후 218건 237명에 이르는 등 각종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장비파괴·손상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방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2) 화재 및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3)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보호와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 규제 완화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순수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개인 및 기업의 이익과는 관련성이 적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의 과도한 규제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취지와 어려운 경제여건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3)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확대·양성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제2010-50호

예고기간 : 2010. 2. 16 ~ 3. 8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www.mke.go.kr)

전문참고 : 에너지안전팀(02-2110-5446)

● 개정이유

1973년에 제정된 현행의 LPG용기 재검사주기는 그간 용기의 품질 및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잦은 재검사 실시로 충전 및 판매 등 관련업계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비용이 연료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싼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검사주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통용기의 안전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용기에 대한 폐기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기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의 LPG 용기 재검사주기를 경과년수가 20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인 용기는 2년마다로 완화함

나. 유통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후용기 사용연한제 도입

- 경과년수가 26년 이상된 노후용기는 3개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토록 함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공 고 : 제2010~54호

예고일자 : 2010. 3. 5 ~ 3. 29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02-509-7243)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www.kats.go.kr)

● 개정취지

자율안전 확인 대상품목인 전기용접기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안전기준 K60974-1 (아크용접기 제1부 : 용접 전원) 안전기준을 정하고자함

주요 개정 내용

가.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974-1(아크용접기 제1부 : 용접 전원)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K60974-1 부속서 사용률 현형 20%~100% 범위 안에서 제조업체가 지정을 50%~100% 범위 안에서 제조업체가 지정으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내

● 부 령 : 제211호

공포일자 : 2010. 2. 16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02-2110-8356)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itm.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경영평가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실제 시공실적보다 시공능력이 과다 평가되고 있어, 과다 평가의 원인이 되는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능력항목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 중 “5배”를 각각 “3배”로, “10배”를 각각 “6배”로 한다.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경영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times 75/100$$

별표 1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기술능력생산액}(\text{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보유기술자수} \times 30/100) + \\ \text{퇴직공제불입금} \times 10 + \text{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 중 “10배”를 각각 “6배”로 한다.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경영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times 75/100$$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기술능력생산액}(\text{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보유기술자수} \times 30/100) + \\ \text{퇴직공제불입금} \times 10 + \text{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정부) 사례

- 건설현장으로써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병행하여 공동분담방식으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감리 및 소방법에 의거 소방감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동법 시행령 제54조의3(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에 기준하여 총괄관리자(통상 책임감리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감리활동을 하고 있는 전기감리원의 감리업무 중 각종계획서 및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조정·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통상 전기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검토서, 설계변경 검토서, 업무지시서, 검증결과 통지서, 감리원 일지 등에 대하여 총괄관리자가 3항에 기준에 따라 조정·확인이라고 주장하며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과연 전력기술관리법에 기준하여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전기감리원의 업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지요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력시설물의 송배전 감리 용역의 감리 인월수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 송배전 감리용역의 인월수 산정을 위하여 공사금액 산정시 투입장비 금액을 포함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발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령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에서 총괄관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동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괄관리자의 지시·통제를 받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계획, 공정계획 등의 조정·확인 및 자료제출요구 등에 응하여 건설공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리자로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6. 10)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1호에서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임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별표 2](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비고 제4호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송전·변전·배전설비공사의 경우,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재재부분 또는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6. 11)

- 전기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전력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배전 해저케이블 공사” 건설관련 발주자가 Turn-key(완성품 인도방식) 으로 발주시 공사감리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현재 5개소현장의 비상주감리원이 신규공고 용역에 PQ로 참여해도 4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여하는 용역을 포함하여 현재5개소 + 참여용역 1개소로서 총 6개소로 보고 3점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에 확실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이 소속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는 감리업자에게 발주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공사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 제7호 등입니다.

- 즉,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감리대상에 해당되므로 “배전 해저케이블 공사”는 발주방식에 관계없이 전기감리대상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6. 13)

- PQ고시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는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한 현장개소로 구분되므로 당해 공고용역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PQ고시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여 모집공고시 제시한 경우라면 당해 공고내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6. 16)

조부의 명의로 토지사정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로 등기를 마쳤더라도 국가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지는 않는다.



글 _ 박종복 변호사

Q 본인의 조부는 민통선 부근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최근 확인한 결과 본인의 조부 명의로 토지사정이 되어 있던 토지가 10여년전에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통하여 국가 앞으로 넘어가 현재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인이 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

A 만약 위 토지가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귀하의 조부 명의로 토지사정 되어 있었다면 귀하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인다. 즉, 일제시대의 토지조사령 또는 임야조사령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서 등에 어느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토지는 토지사정명의인인 귀하의 조부 또는 그 상속인인 귀하 등이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한편 대한민국이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결국 귀하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